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1. 10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한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장애인 인권헌장」에서는 정치·경제·사회·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-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,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짐.

○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,
-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0월 일

발의자: 김길자 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8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1. 10. 6. ~ 10. 12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)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,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8조(장애인 보조조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)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건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, 공공장소, 숙박시설,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건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u>제8조 · 제9조</u> (생략)	<u>제9조 · 제10조</u>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